

(報 告)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1994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4일 소관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사유

서울특별시립으로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7개원을 1995학년도 제1학기 개교예정으로 각각 신설코자 함.

3. 주요골자

- 국민학교 4개교를 신설함(안 【별표 1】)
  - 신설학교명: 신대림, 녹천, 등명, 등원
- 중학교 6개교를 신설함(안 【별표 2】)
  - 신설학교명: 녹천, 노일, 화원, 등원, 등명, 성재
-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함(안 【별표 3】)
  - 신설학교명: 한강전자 공예
- 병설유치원 7개원을 신설함(안 【별표 7】)
  - 신설유치원명: 동원, 창천, 두산, 충무, 고명, 내발산, 신남성

4. 근거법령

- 교육법 제82조

5. 검토의견

가. 신설학교

- '95년도 각급학교 설립계획을 보면,
  - 국민학교가 4개교로서, 남부교육청 관내에 신대림 국민학교가 '95년 3월에, 북부교육청 관내에 녹천국민학교가 '95년도 3월에, 강서교육청 관내에 등명 및 등원국민학교가 '95년 8월에 개교예정이며,
  - 중학교가 6개교로서, 북부교육청 관내에 녹천 및 노일중학교가 '95년 3월에, 강서교육청 관내에 화원, 등원, 등명, 성재중학교가 '95년 3월에 개교예정이며,
  - 고등학교는 한강전자 공예 고등학교가 '95년 3월에 개교예정인바,
- 학교설립의 우선순위 결정기준인

-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내 아파트 입주 학생 수용
- 기존학교의 과대·과밀·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국민학교 수요
- 수용여건 열악지역 학생을 위한 중학교 설립
-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설립추진 가능 지역
- 고교교육 체제개편에 따른 실업계 고교설립기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 학교별 공사추진과 개교예정 시기가 '95학년도 1학기에 해당되며,
- 신설학교의 교명제정을 학교설립 당해 지역의 역사나 유래에 대한 자료와 지역주민, 교육위원, 구·시의원 국회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명제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음.

나. 병설유치원의 개원

- 현행 유치원의 수는 사설유치원 1343개원, 공립유치원 38개원, 총 1381개원으로서, 사설유치원이 97%인바,
- 앞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책에 따라, 공립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의 설치를 점차 확대하려는 시책과 일치하며,
- 또한 유치원의 취원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며, 국민학교 유휴시설을 유치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됨.

다. 결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용상 문제점이 없고, '95년도 각급학교 설치계획을 위한 우선 순위 결정과 학교시설 공사의 추진진도에 맞추어 '95학년도 1학기중에 개교예정으로 있고, 병설유치원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책에 따라, 점차 설치확대하려는 점과 일치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